

- 용산구 한강로3가 65-100번지 일대 -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 구역 공개

우리 구 한강로3가 65-10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가칭) 한강로3가 65-100 신속통합기획추진위원회(위원장 문명자)에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이 있어 동의양식번호 부여 후 다음과 같이 구역계 등을 공개 하며, 추진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을 위한 관련 서식[찬성동의서, 반대 동의서, 동의 철회서, 반대동의 철회서]도 함께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서는 후보지 추천(區 → 市)전까지 제출된 찬성동의서와 반대동의서에 한해 인정되며, 철회 의사가 있는 토지등소유자께서는 동의 철회서는 주민신청 (주민→區)전까지, 반대동의 철회서는 후보지 추천(區 → 市)전까지 제출된 철회서에 한해 인정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 역 계 : 한강로3가 65-100번지 일대

※ 아래 구역계는 신청인이 제출한 구역계로 후보지 추천시 일부 변경·조정될 수 있음



2. 추진주체(번호부여 신청인)

- 성 명 : 문 명 자
- 연락처 : 010-3199-6583

3. (반대)동의양식 번호 및 부여일자

- 우리 구에서는 동의양식번호를 추진주체별 1개만 부여합니다. 동의양식 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다른 추진주체임을 참고하셔서 동의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부여 동의양식번호	한강로3가 65-100번지 일대 제 1-1 호
번호부여일자	2024. 08. 28.
확인(인)	재정비사업과장(인)

4. 공개 장소

- 용산구 홈페이지 > 재정비사업과 자료실
- 한강로동 주민센터 게시판

5. 기타 안내사항

- 한강로3가 65-100번지 일대의 후보지 수시모집 재신청을 위한 동의서는 기 후보지 신청('24.10.)시 제출되었던 동의서 중 번호부여('23.06.08.) 이후 작성되어 요건이 충족된 동의서와 후보지 추천 이후 추가 제출된 동의서에 한하여 재사용이 인정되며, 추가로 징구하는 동의서에는 해당 동의양식번호 (한강로3가 65-100번지 일대 제 1-1호)를 부여함.
- 해당 구역계는 신청인이 제출한 구역계로 후보지 추천 사전검토 과정에서 노후도 등 구역지정 기본 요건 미충족시 후보지 추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또는 일부 중복) 구역계에서 다수 추진주체 추천 불가 원칙에 따라, 다수 추진주체가 동일(또는 일부 중복) 구역에 대하여 동의서 징구할 경우 후보지 추천대상에서 제외됨.
※ 동의양식 번호가 다른 경우 다른 추진주체인 바, 동의시 번호확인 필수
- 후보지 공모 신청전 구역계를 추진주체에서 임의로 변경할 경우, 동의서 번호를 신규로 부여받아야 함.

- 붙임2, 3, 4 서식으로 작성된 반대동의서 및 동의철회서, 반대동의철회서만 인정함.
- 반대동의서와 찬성동의서 중복제출시 마지막 날짜 제출내용으로 간주 처리되며, 반대동의 철회시 찬성으로 무조건 간주 처리되는 것은 아님(찬성 동의서 별도 제출 필요).

붙임 1. 찬성동의서 서식 1부(추진주체에 별도 배부).
2. 반대동의서 서식 1부.
3. 동의철회서 서식 1부.
4. 반대동의철회서 서식 1부. 끝.